

수원지방법원 2014. 10. 24 선고 2013가단75003 판결 [무허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5. 9. 25 선고 2014나45369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4. 10. 24 선고 2013가단75003 판결

전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종결 2014. 9. 26.

판결 선고 2014. 10. 24.

주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, C는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10562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959㎡ 지상에 위치한 ≡ 건물 117㎡², ≡ 건물 232㎡, ≡ 하우스 24㎡, ≡ 컨테이너 13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D은 가.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550㎡ 지상에 위치한 ≡ 건물 20㎡, ≡ 건물 29㎡, ○ 건물 103㎡, ≡ 건물 31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피고 I는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, 35, 36, 37, 38,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마) 부분 190㎡ 지상에 위치한 ≡ 건물 11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라. 피고 H는 가.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, 9, 10, 11,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144㎡ 지상에 위치한 ≡ 건물 64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원고의 주위적 피고 E, 피고 F,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E 및 피고 F,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, C, D, H,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[피고 B, C, D, H]

주문 제1의 가., 나., 라.항 각 기재와 같다.

[피고 F, G]

피고 F, G은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846㎡ 지상에 위치한 ≡ 건물 88㎡, ≡ 건물 17㎡, ≡ 건물 32㎡, ≡ 건물 39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[피고 E, I]

주위적으로,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, 35, 36, 37, 38,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마) 부분 190㎡ 지상에 위치한 ㅎ 건물 11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예비적으로, 주문 제1의 다.항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016/252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.

나. 피고 B, C, D, I, 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 목적물을 소유하면서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.

피고 B, C	ㄱ 건물 117㎡ ㅋ 건물 232㎡ ㅌ 하우스 24㎡ ㅍ 컨테이너 13㎡	별지 감정도 표시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959㎡
피고 D	ㅂ 건물 20㎡ ㅅ 건물 29㎡ ㅇ 건물 103㎡ ㅈ 건물 31㎡	별지 감정도 표시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550㎡
피고 I(피고 E 점유)	ㅎ 건물 115㎡	별지 감정도 표시 34, 35, 36, 37, 38,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마) 부분 190㎡
피고 H	ㅊ 건물 64㎡	별지 감정도 표시 8, 9, 10, 11,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144㎡

다. 한편, 피고 F, G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846㎡ 지상에 위치한 ㄴ 건물 88㎡, ㄷ 건물 17㎡, ㄹ 건물 32㎡, ㄺ 건물 39㎡를 점유, 사용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제2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영상,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먼저, 주위적 피고 E 및 피고 F,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,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

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각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하므로(원고는 피고 F, G이 위 1.의 다.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,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, 위 피고들에 대한 각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.

나. 다음으로, 피고 B, C, D, H 및 예비적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며 각 토지 부분을 점유, 사용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각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M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포괄적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N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을 제1, 2, 4호증의 각 기재,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E 및 피고 F,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주영

별지